

며느리 때린 시부모 입건 98. 7.3

가정폭력 처벌법 첫 적용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며느리를 때린 시부모가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며느리와 시비를 벌이다 가슴 등을 때린 시부모 ㄱ(59)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시부모 ㄱ씨 부부는 지난 1일 낮 12시20분께 며느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들 ㄴ(28)씨와 함께 집을 가지러 갔다가 시비 끝에 며느리와 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양쪽이 서로 처벌을 원하자 시부모를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며느리를 존속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은 시부모가 며느리를 때렸을 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224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법

죄 특례법에 예외조항을 둬으로써 처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됐다.

김태경 기자

“서로 상의를 해야죠”

발기부전-가사소홀 갈등

맞소송부부 이혼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문영화 판사는 2일 남편의 발기부전 등을 이유로 위자료 및 이혼 청구소송을 낸 ㄱ씨와 아내의 가사 소홀을 이유로 맞소송을 낸 남편 ㄱ씨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혼 판결을 내렸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기능 장애 문제를 아내와 터놓고 상의하지 않은 남편과, 남편의 곤란한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가사를 소홀히 한 아내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어느쪽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민 기자